



---

#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

---

2021. 1.

**교 육 부**  
[대학재정장학과]

# 목 차

I . 추진 배경 .....	1
II . 2020학년도 2학기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..	2
III . 202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및 주요 개선 사항..	4
IV . 2021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.....	5
[붙임]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.....	7

#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

## I 추진배경

### 1 배경

-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
-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

### 2 사업근거

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\* 및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4조\*\*

\* 국가는 ...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\*\* 국가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3 추진경과

- ('09년)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('09.2.6.) 및 재단 설립을 통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('09.2학기),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발표('09.7월)
- ('10년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정('10.1.)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
- ('13년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3.5.)을 통한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
- ('14년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4.5.)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('14.7.~'15.5.), 장기 연체 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('14.10.)
- ('20년)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0.3.)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 재시행('20.4.~'21.3.)

## II

# 2020학년도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

## 1 추진 현황

- (대출실적) 학자금 대출은 총 60만 명에게 약 1.7조원 대출
  -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0.8조원,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0.9조원 대출  
(단위 : 건, 억 원)

구 분	인 원	금 액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	361,802	8,214
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	241,102	8,940
<b>합 계</b>	<b>602,904</b>	<b>17,154</b>

- (대출금리)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(2.2%→1.85%)
  - 대학생·청년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'20년 1학기 대출금리를 2.2%에서 2.0%로 0.2%p 인하한 후 '20년 2학기 금리를 2.0%에서 1.85%로 0.15%p 추가 인하

< 최근 6년간('15년~'20년)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>

2015		2016		2017		2018~2019		2020	
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
2.9%	2.7%	2.5%	2.25%	2.2%	2.0%	1.85%			

- (상환기준소득 인상) '2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\*을 2,17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지원  
\* (현행) 연 2,080만 원 → (개선) 연 2,174만 원
- (생활비대출 한도 내 횡수제한 폐지)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 (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) 내에서 횡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
※ (기존) 학기당 150만원, 1회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, 4회 분할 대출 → (개선) 학기당 150만원, 1회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, 횡수제한 없음
- (저금리 전환대출 재시행) '14~'15년 저금리 전환대출 시 신청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시적('20. 4. ~ '21. 3.)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의 전환 기회 부여(전환금리 2.9%)

- (실직·폐업자 특별상환 유예 한시 지원) 코로나19로 인해 실직·폐업한('20.1.20.\*~ '20.12.31.까지) 본인·자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(최장 1년)
  - \* 코로나19 위기경보 주의단계(국내 최초 발생일 기준)
  - 학부졸업 여부 및 나이(만35세 이하)와 관계없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학자금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 확대
- (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)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대상을 성년자의 경우 현행 '19학년도 입학 학부생에서 '20학년도 입학 학부생\*까지 확대
  - \* 기혼자,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
- (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단일금리에서 '대출금리+연체가산금리'로 개편('20-1학기 신규대출분부터)
- (지연배상금률 인하)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'20.1학기 4.5%(대출금리 2.0%+연체가산금리 2.5%)에서 '20.2학기 3.85%(대출금리 1.85%+연체가산금리 2.0%)로 0.65%p 인하
  - ※ ('20.1학기 지연배상금률) 대출금리(2.0%)+ 연체가산금리(2.5%) = 4.5%
  - ('20.2학기 지연배상금률) 대출금리(1.85%)+ 연체가산금리(2.0%) = 3.85%
- (해외유학생 연대보증 폐지)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 유학 신고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및 '상환이행 약정서' 징구로 신고 과정 간소화 및 채무자 편의성 증대
- (일반상환학자금 사전승인 기간 확대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기간을 기존 '등록 마감일 포함 5일(공휴일 제외) 전'에서 '학기 개시 월(3월, 9월) 10일(공휴일 제외) 전'까지 확대
- (모바일 금융교육 제공)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총 8개(학자금대출 기본 교육 및 상환안내 등)의 금융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여, 대출 편의성 제고 및 금융교육 강화

## 2 대출금리 현황

- '20년 한·미 기준금리는 하락\*하였으며, 국고채(5년)·장학재단 채권 조달금리는 상반기 하락 및 하반기 상승 추세이며, 코로나19 영향으로 '21년 대·내외 경제상황 및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존재
  - \* (한은) '20.12월 현재 0.5% ('20.3월 0.5%p, '20.5월 0.25%p 인하 후 유지) (美) '20.12월 현재 0.00~0.25% ('20.3월 2차례에 걸쳐 각각 0.5%p, 1.0%p 인하 후 유지)
  - \*\* (국채 5년물) '20. 7월 말 1.03% → '20.11월 말 1.34% (재단채) '20.7월 말 1.20% → '20.11월 말 1.47%
- **현행 대출금리(1.85%)**는 법령상 상한선인 '20.11월 기준 국채 5년물 3년 평균금리(1.734%)의 120%(2.081%)\*보다 낮은 수준
  - \* 최근 3년간 국채 5년물 평균 수익률의 120%를 초과할 수 없음(학자금상환법 제11조)

## 3 개선 필요사항

- (ICL 일원화 요구) 대학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 지원 확대 및 일원화 방안 마련 요구 증가에 따른 ICL 일원화 검토 필요
- (상환기준소득) 2021년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여 저소득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 필요

<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현황 >

(단위 : 만원)

연 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상환기준소득 (총급여기준)	1,592	1,636	1,728	1,795	1,856	1,856	1,856	1,856	2,013	2,080	2,174

- (실직·폐업자 특별상환 유예) 코로나19 확산 및 타 특별상환 유예대출 채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, 경제적 곤란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·폐업자의 상환 유예 지속 필요

### Ⅲ

## 202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및 주요 개선 사항

### 1 기본방향

- 대학(원)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 및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부담 및 상환 부담 경감 정책 추진
-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확대

### 2 대출금리

- '20년 하반기 기준금리 하락 추세와 재단채 조달금리 수준 및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여, 학생·학부모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'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.85%에서 1.70%로 0.15%p 인하

< 최근 7년간('15년~'21년)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>

2015		2016		2017		2018~2019		2020		2021
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	1학기
2.9%	2.7%	2.5%		2.25%		2.2%		2.0%	1.85%	1.70%

### 3 주요 개선사항

- (4구간 이하 대학생 ICL 의무화)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의무화하여 재학 중 상환유예 및 생활비 무이자 지원
  - ※ 4구간 이하 ICL 의무화로 '21년 약 4.2만 명의 대학생에게 추가로 학자금 상환 유예 혜택을 지원하고, 생활비 무이자 지원을 통해 연간 7억 원의 이자비용 경감 효과
- (ICL 상환기준소득 인상)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,280만 원으로 상향 조정\*하여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 경감
  - \* ('19) 연 2,080만 원 → ('20년) 연 2,174만 원 → ('21년) 연 2,280만 원(↑106만 원)

- (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) '21년부터는 실직·폐업한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고, '20년 실직·폐업으로 1년간 상환이 유예된 자도 유예기간을 최대 2년 추가 연장 지원 (총 3년)
  - ('21년 실직·폐업자)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
  - ('20년 유예자) 실직·폐업이 지속되는 자에게 최대 2년 추가 연장 (총 3년)
    - \* (기존) 1년 간 상환유예 → (변경) 최대 3년 간 상환유예 가능

## IV 2021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

- '21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(안)

구 분	1월	2월	3월	4월	5월
등록금 대출	신청: 1.6.(수)~4.14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6.~5.6.)				
	실행: 1.6.(수)~4.14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6.~5.7.)				
생활비 대출	신청: 1.6.(수)~5.6.(목)				
	실행: 1.6.(수)~5.7.(금)				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	신청: 1.6.(수)~5.24.(월)				
	실행: 1.6.(수)~5.25.(화)				

- ※ 사전신청자(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)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
- ※ 학자금 지원구간 선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(예: 2월말 등록마감 → 1월초 이내 신청)
- ※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
- ※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

-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
  - (신청 시간) 09:00~24:00
    - ※ 단,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, 생활비 대출,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
  - (실행 시간) 09:00~17:00
    - ※ 단,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
    - ※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

[붙임]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1부

## I 학자금 대출 지원

### 1 대출제도 개요

#### ① 대출자격

##### □ 공통

- (대출대상)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(신입, 편입학, 재입학) ·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\* 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
- \* 1) 단,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
- 2)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

- (성적기준)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,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\* 이상

- \*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

- ※ 통합6년제(의대 등)의 본과 진학 학생은 학칙에 따라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,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라도 대출 가능

- \* 대학의 학칙 등에서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(이수학점, 백분위)으로 반영

#### 【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】

지원 대상	직전학기 성적	직전학기 이수학점
대학원생, 졸업학년 학부생	70/100점(C학점) 이상	기준 적용 제외
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인	기준 적용 제외	기준 적용 제외

※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

##### 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

- (대출대상)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(이하 “재단”)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(편입학 포함)하는 대학생

- (소득기준)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학부생
  - ※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
  - ※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
- (대출연령) 만 35세 이하(단, 전문대학 계약학과(채용조건형) 및 선취업 후진학자\*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\*는 만 45세 이하)
  - \*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)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)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
    - 학위과정명: 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, ② 재직자 특별전형과정,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

## □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
- (대출대상) 학부생 및 대학원생
- (대출연령) 만 55세 이하
  - ※ 단,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(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),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
- (신용요건)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\*을 충족하며,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
  - \* 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,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(신용유의자), 공공정보(개인회생인가결정, 파산면책결정 등) 등이 등록(기록보존 포함)된 자 등 대출 제한.
  - 다만, 개인회생종결(면책종결)/파산면책이 되고,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료,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,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대출 가능
  - 단,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하며,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 가능

## 2 대출금리

- (대출금리) 연 1.70% ('21.1.6.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)
  - (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) 변동금리
  - (일반 상환 학자금대출) 고정금리

## 3 대출한도
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  - (등록금 대출) 실소요액 전액
    - ※ 단,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,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
    - ※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
      - 4년제 대학(전문대학 포함) : 4천만원
      - 5·6년제 대학 및 일반·특수대학원 : 6천만원
      - 의·치의·한의계열 대학(원) 및 전문대학원 : 9천만원
    - ※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(원)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
  - (생활비 대출) 학기당 150만원(연간 300만원), 한도금액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분할대출 허용
    - 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(단,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)
    - ※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(사전승인 포함)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(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, 잔여 생활비(100만원)는 등록 후 대출 가능)

## 4 특별승인제도

- 성적,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
- 승인 기준
  - (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)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'특별승인 교육'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(대학의 별도 심사·추천절차 없음)

- 단,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'4주(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) 이상'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(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)

**【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】**

사 유	제출서류	확인사항
본인의 사고 및 질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(입퇴원확인서, 진료확인서 등)</li> <li>※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(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) 이상 여부</li> <li>※ 단, 해당 학기기간(1학기: 3~6월, 2학기: 9~12월)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</li> </ul>

- (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) 학생이 '재학생 기등록/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'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,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

**【 특별승인 기준 】**

구 분	가능횟수	특별승인 대상자	내 용
성적 기준	2	성적 미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</li> </ul>
		이수학점 미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12학점)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</li> <li>※ 단, 특별승인 성적기준(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)은 충족 필요</li> </ul>
성적 외 기준	1	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(분납)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</li> </ul>

\*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(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)

※ 신입생(군)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

※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

○ 승인 횟수 제한

- (성적 기준)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

- (성적 외 기준)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

※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,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('09년 2학기부터 '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)

### 【특별승인 횡수 계산 시 참고 사항】

-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: 특별승인 가능 횡수 중 항목별(성적 기준, 성적 외 기준)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
-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: 특별승인 가능 횡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

## 5] 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

- '21학년도 1학기 「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」에 따름

## 6]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

- (대상) 재학생(신입생군 제외)
- 대학에서 분할납부 정보를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차부터 지원

## 7] 기타사항

- WEST 대출\*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
  - \* 한·미 대학생 연수(WEST) 프로그램 합격자들의 원활한 참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어학연수비 대출(참가비 중 어학연수비에 한해 대출 지원)
-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 의무수강, 재대출자는 8개 교육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 수강하도록 함
-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,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(대출 신청일 기준) 및 '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통지 가능
- 학자금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
- 특별상환유예대출\*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(부/모 사망, 부/모 파산·면책 또는 개인회생, 본인 장애 등), 일정기간(최대 3년)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제도
  - \* 기본자격 및 추가 자격요건(유형 택1)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
- 실직·폐업자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계속 지원
  - (유형8-①: 위기지역 실직자 지원) 지정 해제 시까지 지원
    - \* 단,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「고용위기지역」 및 「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」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시 그 추가 지정 또는 해제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 추가 또는 해제

- (유형12: 코로나19 실직·폐업자 지원) '23. 2. 28.까지 유예기간 연장 신청
  - ※ '20년 실직·폐업으로 1년간 상환이 유예된 자가 유예기간 종료되는 시점에도 실직·폐업 상태인 경우 유예기간을 1년씩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
- (유형13: 실직·폐업자 지원) '21. 12. 31.까지 신청
  - ※ '21.1.1. 이후 실직·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에게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부여(단, 만 35세 이하 학부 졸업생 등 기본요건 충족 필요)

##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

### □ 추진배경

-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

### □ '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

- '18년~'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'21학년도 신·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
  - (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) 신·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% 제한
  - (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) 신·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% 제한

#### 【'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】

등급		학자금 대출 제한	
		일반상환학자금	취업후상환학자금
재정지원제한 대학	유형 I	신·편입생 50% 제한	제한 없음
	유형 II	신·편입생 100% 제한	

※ 학자금 범위: 「장학재단법」 제4조(학자금 지원의 범위)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, 교재구입비,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

※ 대출신청자의 등록(예정)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상의 등록금액 (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)에 제한등급별 대출비율 적용(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, 신청자의 실 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)

### □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

-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·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'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중,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
  -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, 이후 계속 해제

《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》

- 입학 당시 제한대출(일반상환학자금 30% 제한, 생활비 미제한) → 최소대출 → D등급 하위 → 그룹3 → 재정지원제한대학: **일반상환학자금 30% 제한(생활비 미제한)**
- 입학 당시 최소대출(일반상환학자금 70% 제한, 생활비 미제한) → D등급 하위(일반상환학자금 50% 제한, 생활비 동일 제한) → 그룹3 → 재정지원제한대학: **일반상환학자금 50% 제한(생활비 미제한)**
- 입학 당시 D등급 하위(일반상환학자금 50% 제한, 생활비 동일 제한) → 그룹3 → 재정지원제한대학: **일반상환학자금 50% 제한(생활비 동일 제한)**
- 입학 당시 그룹3(일반·취업후상환학자금 50% 제한, 생활비 동일 제한) → 재정지원제한대학: **일반·취업후상환학자금 50% 제한(생활비 동일 제한)**
- 입학 당시 제한대출(일반상환학자금 30% 제한, 생활비 미제한) → E등급 → 그룹3 → 재정지원제한대학: **일반상환학자금 30% 제한(생활비 미제한)**
- 입학 당시 최소대출(일반상환학자금 70% 제한, 생활비 미제한) → E등급 → 그룹3 → 재정지원제한대학: **일반상환학자금 70% 제한(생활비 미제한)**

《 '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》

구분(제한 범위)		학 교 명
4년제 (7개교)	일반상환 50% 제한 (2개교)	금강대학교, 예원예술대학교
	일반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5개교)	경주대학교, 신경대학교, 제주국제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
전문대 (6개교)	일반상환 50% 제한 (2개교)	고구려대학교, 서라벌대학교
	일반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4개교)	광양보건대학교, 서해대학, 영남외국어대학교, 웅지세무대학교

※ 대학명은 가나다순임

## II

#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

##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
### □ 대출원리금 상환 안내

-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 통지(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)
- 전화, SMS, E-mail,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 안내

### □ 상환기간,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총당

- (대출기간) 최대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\*
  - \*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,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
  - (거치기간)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,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기간으로 학생이 선택
  - (상환기간)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

구 분	내 용
거치기간	· 대출이자만 상환
원리금 상환기간	·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(매월) -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

- (상환방식)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

구 분	내 용
원금 균등분할상환	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,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(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)
원리금 균등분할상환	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(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)

○ 대출원리금의 충당 순서

- (원리금 상환 시) 이자, 원금의 순서로 충당
- (대출 중도상환 시) 중도상환 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(일할계산), 원금의 순서로 충당

※ 단, 연체 중일 경우, 지연배상금, 약정이자(일할계산), 원금의 순서로 충당

□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: 없음

□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

- 학자금대출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‘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’에 따름
- 다만, 학적변동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‘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’의 경우는, 『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(생활비)』 제3조에 따름

- 재단이 서면으로 상환 독촉 후,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
- 휴학에 의한 학적변동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음
-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한함
- 『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』 제6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를 적용하지 않음

□ 조건 변경

-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①대출기간(거치·상환기간), ②납입일, ③상환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
-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: 계좌별 2회
- 납입일 : 계좌별 연 1회

## □ 제3자 상환방법

- 채무자 외 제3자(이하 “신청인”)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신청서\*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
  - \* “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” 또는 “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”
-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처리
-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

## □ 사전채무조정 제도(프리워크아웃)

- (개요)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,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전 분할상환약정, 지연배상금 감면약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
- (대상)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연체 3개월 이상 경과 채권, 부실채권\* 또는 만기경과 채권 1계좌 이상 보유한 채무자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정상채권 전부
  - \* 부실채권 : 학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(분할상환금 포함)의 상환 약정 기일에 약정금액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과 구상채권을 모두 포함한다.
- (혜택)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채무조정제도(분할상환약정,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) 조기 이용
  - \*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후 기한이익상실 된 부실채권의 경우에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

##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

### □ 상환기간 및 상환의무 발생·면제

- (상환기간) 대출시점으로부터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
- (상환의무 발생)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담하나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
- (상환의무 면제)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
  - 다만,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본인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,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

### □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

- (상환기준소득) '21년 귀속 총급여 기준 2,280만원(공제 후 1,413만원)
  - 의무상환액 :  $[(\text{연간소득금액} - \text{상환기준소득}) \times \text{상환율}(20\%)] - (\text{사업·근로소득의 경우}) \text{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}$ 
    - ※ 단, 퇴직소득 및 상속·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음
- 대출원리금의 계산
  -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 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,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
    - ※ 다만, 특별법 개정('14.5.14. 의무상환 개시 이후 복리 변경조항 삭제)에 따라 '14.5.14. 이전 의무상환이 개시된 경우 의무상환 개시일부터 '14.5.14.까지 발생한 이자는 복리를 적용하며,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단리를 적용

### □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

- (연체금) 채무자(원천공제 의무자 포함)가 의무상환액을 고지된 납부

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액의 3%를 연체금으로 징수

- (연체가산금) 채무자(원천공제 의무자 포함)가 미납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에 1.2%를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

※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9%를 초과하지 못함(특별법 제30조제2항)

## □ 상환방법

### ○ 자발적 상환

-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
- (상환방식) 대출중도상환(일시납), 자동이체약정 등록(월납)
- (약정/해지 방법) 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

※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이체약정 해지

### ○ 의무적 상환

- 종합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, 근로소득·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 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의무상환액을 상환
- 매월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원천 공제하였으나 원천공제 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,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

## □ 제3자 상환방법

- 대출자의 제3자(이하 “신청인”)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,
  - ① 신청인은 “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” 또는 “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”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
  -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처리
  -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 계좌로 대출금 상환

###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

#### □ 채무자 신고

##### ○ 채무자의 정기신고

-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, 직장,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 
(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)
- 군복무, 해외여행,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연중 채무자신고 가능

##### ○ 채무자의 수시신고

-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 발생 사실, 소득의 종류,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
-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

#### □ 장기미상환자 지정

##### ○ 지정기준

- (졸업기준)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
  -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
  -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(중퇴, 자퇴, 제적, 입학취소, 입학포기(미등록) 등)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
  - 다수의 대학 졸업 시, 최종대학 졸업 기준(단,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)
- (상환기준) 상환(자발적 상환 포함)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

- 상환개시일 : 의무적 상환 개시일(졸업 전),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(졸업 후)
- 대출원리금 :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
  - ※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담당
- 졸업 검증방법 :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
- 장기미상환자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편, 전화 등을 통해 장기미상환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활동 실시(6개월 전부터 실시)
  - ※ 재단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신용정보 집중기관,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음

## □ 해외이주자 관리

- 관리 대상 :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(해외이주법 제4조)
- 신고의무 :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
- 상환의무
  -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
  - 다만,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(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)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
  - 이주 신고 시 전액상환 또는 분할상환까지 완료하여야 신고 완료 처리(분할상환약정 미체결 시 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 불가)
-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
  -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 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
  - 다만,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

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(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)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

- 일정기간 미신고·미상환 상태가 지속된 장기출국자에 대해 국내 거소가 확인된 경우 신고 및 상환 독려

#### ○ 해외이주자 파악방법

- 채무자의 신고 :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
- 채무자의 미신고 : 법무부(출입국 정보), 외교부(해외이주신고), 행정안전부(주민등록전산정보) 수신

### □ 해외유학자 관리

#### ○ 해외유학의 범위

- 외국의 교육기관,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·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
- 교환학생, 자비유학(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, 어학연수, 워킹홀리데이, WEST 프로그램, 해외인턴십, 해외봉사 등)

#### ○ 신고의무

-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(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)
- 다만,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, 이메일,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

#### ○ 상환의무

- 유학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

#### ○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

- 채무자가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

- 아니할 경우,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
- 다만,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
-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

### ○ 해외유학생 파악방법

- (해외유학생 파악) ① 채무자 신고 :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(채무자가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), ② 채무자의 미신고 :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정보 수신

※ ②번의 경우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에게 신고제도를 안내하여 유학신고를 독려

- (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관리) ① 귀국신고 : 유학 후 귀국한 채무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귀국신고(출입국증명서 업로드), ② 연장신고 : 학업 계획기간이 연장된 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신고

※ 홈페이지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해외이주/유학신고 변경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신고 가능

- 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미귀국자 및 연장 미신고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일, 우편 등을 통해 안내활동 실시

### ○ 보증계약의 해지

- (해지 대상) 신고 및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한 해외유학자가 귀국신고를 완료한 경우 기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은 해지
- (해지 심사)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입국 사실 확인\*

\* 법무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 상 귀국신고자의 입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국 신고를 접수하되, 법무부 출입국 정보로 귀국신고자의 입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제출한 증빙서류로 입국 사실 확인

## □ 해외소득 발생자

-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
-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해 교육부장관이 정함

## □ 과태료 부과 유예

-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44조제2항(채무자신고,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)에 따라,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
  -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문제, 학자금 채무 부담 완화정책 추진 (16.4.27. 청년·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) 등을 고려, 과태료 부과 유예
    - \* 과태료 부과대상자 발생 감소를 위해 취업후상환학자금 의무상환액 신고 납부를 고지납부로 전환('15.6. 법률 개정)
- 향후 미납률 추이,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등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과 여부 검토

##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

### □ 회수금 총당순서

#### ○ 상환방식에 따른 총당순서

구분		총 당 순 서	비 고
자발적 상환	1회성 상환	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 대지급금 → 과태료 → 이자 → 대출원금	①,② 중 차주 선택
	자동이체 방식	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유예이자 우선 총당 (이자 → 대출원금) * 대지급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(대지급금 → 과태료 → 이자 → 대출원금)	
의무적 상환		(계좌순서) 금리가 높은 계좌 → 대출실행일자가 빠른 계좌 → 대출잔액이 작은 계좌 (계좌별) 이자 → 원금 → 연체금 및 가산금	국세청 방식
분할상환		대지급금 → 과태료 → 연체금 및 가산금 → 이자 → 대출원금	
강제징수		징수처분비 → 이자 → 원금 → 연체금 및 가산금 → 과태료	특별법 시행령 제35조

### □ 분할상환

#### ○ 분할상환 전환대상

-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
-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
-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·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

#### ○ 분할상환금액

-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(연체금, 가산금 포함) 잔액(징수처분비,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 전환)

#### ○ 약정금리: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

○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른 분할상환 기간

- 대출원리금 잔액 2,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5년(60개월)
- 대출원리금 잔액 4,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0년(120개월)
- 대출원리금 잔액 4,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5년(180개월)

○ 신청방법

- 채무자가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 → 징수처분비, 과태료 납부 및 전환신청서 작성, 담보제공(보증인 입보 포함, 해외유학생은 보증인 입보 생략), 전환약정서 작성 → 재단 심사 후 승인(승인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)

□ 사고채권의 처리

- 채무자는 사고채권\*에 대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, 「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」 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이 경우 재단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

\* 사고채권

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·결정된 경우
-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16조제2항에 의해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
- 「민법」 또는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16조제3항에 의해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

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, 그 사고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함

-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권은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동법 제40조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.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
- 사고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
  - ※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
-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

#### 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의 안내

- 채무자의 상환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채무자에 학자금 대출 채무 현황 확인 방법 및 상환절차 등을 우편, 이메일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음

#### □ 상시협의체의 구성·운영
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재단과 국세청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·운영

#### □ 대학의 역할

-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

## 5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

### □ 부실채권 정의

#### ○ 구상채권

- 은행에서 실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('05.2학기~'09.1학기)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

#### ○ 기한이익상실채권

- 재단 설립 이후 실행된 직접대출('09년 2학기~)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

#### ○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고채권

-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, 채무자가 사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

### □ 부실채권 손해금(지연배상금)률

#### ○ 구상채권(손해금) : 연이율 9%

- 단,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해 손해금 감면 가능

#### ○ 기한이익상실채권(지연배상금)

- (~'19-2학기) 연이율 6%
- ('20-1학기~) 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
- 단,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10제6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해 지연배상금 감면 가능

### □ 부실채권 관리 프로세스

- 보증채무 이행 또는 연체 6개월 이상, 개인회생, 사망 등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, 재산조사, 채권보전조치, 소송, 신용회복 지원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관리

- (신용도판단정보 등록) 부실채권 발생사유가 대위변제, 연체의 경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신용유의자\*로 관리
- \* '15년 1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“신용불량자”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 등에서 이를 대체할 용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, 신용유의정보보유자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, 재단에서는 이를 “신용유의자”로 명함
- (재산조사) 채무자의 변제여력 파악 및 악의적으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착수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, 지적·건축물 정보, 임금·직장정보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재산 조사
- (채권보전조치 실시) 선순위 채권액, 경합채권 등을 고려한 예상 실익을 산정하여 가압류·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실시
- (소송)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, 집행권원 확보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 (지급명령 포함)
- (강제집행)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무자가 실익 있는 부동산·급여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법원의 경매, 압류 추심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
- (신용회복지원)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 제도, 지연배상금(손해금) 감면제도,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,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,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

## □ 신용회복지원제도

- (분할상환제도) 부실채무자의 경우 채무액을 전액 일시에 갚아야 하나,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제도
- (지연배상금·손해금감면제도)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·손해금(연체이자)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
- (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) 졸업 후 2년까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

- (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신용회복지원) 『청년·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(정부부처 합동 발표)』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
- (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)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종료하거나 참여(2단계 이상)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연배상금 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

## □ 부실채권 상각

- 법적절차,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,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말에 부실채권을 상각
  - 상각된 부실채권은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

- < 참고 >
1. 학자금 대출제도 비교
  2. 대출 업무 절차
  3.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
  4. 대출채권 관리 업무 흐름도
  5.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신·구대비표

# 참고 1

##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

※ '21학년도 1학기 기준

구분	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	
신청 대상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(대학원, 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(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)</li> </ul>
	연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</li> </ul>
	성적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입생 : 제한 없음</li> <li>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</li> <li>※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입생 : 제한 없음</li> <li>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</li> <li>※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</li> </ul>
	소득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</li> <li>※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</li> <li>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부생: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</li> <li>※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, 학자금지원 구간 신청시간 소모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</li> <li>대학원생: 학자금지원 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
	신용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</li> </ul>
대출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변동금리(연 1.70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정금리(연 1.70%)</li> </ul>	
대출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등록금 : 소요액 전액(한도 없음)</li> <li>생활비 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등록금 : 소요액 전액(한도 있음)</li> <li>※ 대출금액 총 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학(전문대학 포함) : 4천만원</li> <li>· 5, 6년제 대학 및 일반, 특수대학원 : 6천만원</li> <li>· 의/치의/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: 9천만원</li> </ul> </li> <li>생활비 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</li> </ul>	
대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'21년 기준 연소득 2,280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</li> <li>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</li> </ul>	
상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</li> <li>자발적 상환: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(재단) (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</li> <li>※ 중도상환 가능(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</li> </ul>	

## 참고 2

## 대출 업무 절차

대출단계	재 단	학 생 / 가구원	대 학
단계별	업무 내용		
대출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홈페이지 정비</li> <li>- 실행 전산 시험 가동</li> <li>- 업무처리기준(안) 작성</li> <li>- 대출 금리 고시</li> <li>- 대출 상담</li> </ul>	<b>(학생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인증서 발급</li> <li>-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</li> </ul> <b>(가구원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인증서 발급</li> <li>-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등록(수납)일정 확정</li> <li>- 수납일정 등록</li> <li>- 대표계좌 등록</li> <li>- 학과 정비(선취업 후진학 등)</li> </ul>
대출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자 확인</li> <li>- 제출서류 확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교육 이수</li> <li>- 대출신청서 작성</li> <li>-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자 확인</li> </ul>
신청 및 서류 완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출서류 확인·처리</li> <li>- 오제출, 미제출시 통보</li> <li>- 서류 완료 통보</li> <li>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필요시) 증빙서류 제출</li> <li>-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출서류 확인·처리</li> <li>- 대상자 확인 (학적정보 업로드)</li> <li>- 수납원장 업로드</li> <li>- 분납정보 업로드 (대상자 존재 시)</li> </ul>
대출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사진행 (신용도판단정보, 연체정보, 성적, 연령, 대출한도, 중복 지원정보, 대출제한대학 등)</li> <li>- 거절사유 확인</li> <li>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</li> <li>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(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, 연체거절, 성적거절, 연령거절, 중복지원정보 보유자, 대출 제한대학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자 확인 (학적정보 업로드)</li> <li>-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</li> </ul>
대출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출승인 통보</li> <li>- 수납원장 확인</li> <li>- 수납일정 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</li> <li>- 대출금 지급신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</li> <li>-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</li> <li>- 기등록자 관리</li> </ul>
대출실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계좌 잔액 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출조건 등 입력</li> <li>- 대출 약정 체결(핵심설명서 제공)</li> <li>- 대출 실행 완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</li> <li>- 추가 등록일정 입력</li> </ul>
사후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</li> <li>- 미성년자 및 '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</li> <li>-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行者 기등록 정보 업로드</li> <li>-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</li> <li>- 등록금 반환 (신(편)입생 추가대출 등)</li> </ul>

※ 단,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

### 참고 3

###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

구 분	주요 제도 개선 사항
'09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(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)</li> </ul>
'10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</li> <li>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</li> <li>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간소화(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)</li> <li>소득구간 산정기간 단축 (10일→ 2일)</li> </ul>
'1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자금대출 사전승인제 도입(신입생 대상)</li> <li>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 신설(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)</li> <li>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(23개 대학)</li> </ul>
'1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: B학점→C학점</li> <li>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</li> <li>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: 셋째 이상 폐지(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)</li> </ul>
'13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업후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(연간 200만원→300만원)</li> <li>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을 인하(3개월 이하 : 15%→10%, 3개월 초과 : 17%→12%)</li> <li>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</li> </ul>
'14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별추천자 관리 강화(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제출)</li> <li>저금리 전환대출 시행(기존 최소 7.8% 금리를 2.9%로 인하)</li> </ul>
'15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분위 8구간까지 확대</li> <li>신·편입생 추가 대출 실시(추가등록 학생 편의 고려)</li> <li>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(만 60세 미만)</li> <li>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(만 45세 이하)</li> <li>대출금리 인하('13.1학기~'15.1학기 2.9% → '15.2학기 2.7%로 0.2%p 인하)</li> </ul>
'16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16년 대출제한 제도 변경('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제한 비율 적용)</li> <li>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한도를 누적 대출 공급액에서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변경</li> <li>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(한도 대출방식 적용)</li> <li>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(기존 26분 → 10분 분량 내외 간소화,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강화)</li> <li>이수학점 제한제도 완화(기존 12학점 이수학점 → 대학별 최저 이수학점)</li> <li>대출 일정 조정(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징수기일 이내 대출 실행)</li> <li>초과학기 대출 제한 및 특별추천 자동승인(자동승인 2회 및 초과학기 특별추천 1~2회)</li> <li>대출제도 선택제(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) 도입</li> <li>대출금리 인하('15.2학기~'16.1학기 2.7% → '16.2학기 2.5%로 0.2%p 인하)</li> <li>재학생 등록예정자(소득구간 및 학사정보, 수납원장 정보가 확인된 자)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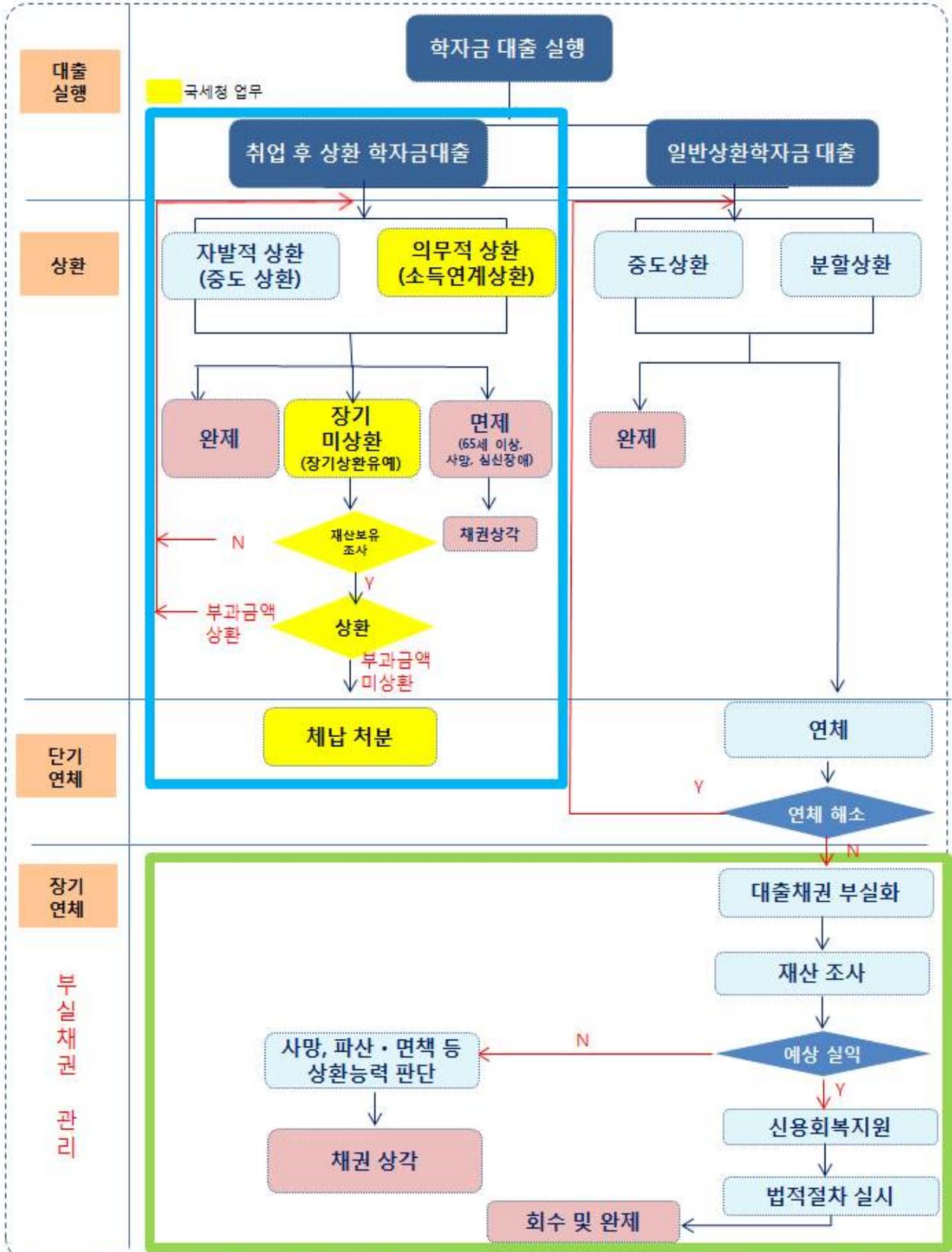
구 분	주요 제도 개선 사항
'17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(만 35세 → 만 45세)</li> <li>■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·재산 조사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</li> <li>■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(2회 → 4회 확대)</li> <li>■ '17년도 대출제한제도 변경('16년 맞춤형 컨설팅 이행 및 자율적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신·편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제한 비율 적용)</li> <li>■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을 인하(3개월 이하 : 10%→7%, 3개월 초과 : 12%→9%)</li> <li>■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방식 완화(소득구간 및 학사정보만 확인)</li> <li>■ 신입생 기등록자 생활비 단독 실행(대학 등록 여부 확인 후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전 생활비 단독 대출) 가능</li> <li>■ 등록금 최소대출금액 하향 조정(50만원→10만원)</li> <li>■ 학자금대출 철회 제도 도입(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및 전액 상환 시 철회 가능)</li> <li>■ 학자금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(365→366일)</li> <li>■ 대출 약정 시 학자금 대출 핵심설명서 제공</li> </ul>
'18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출금리 인하('17. 2학기 2.25% → '18. 1학기 2.20%로 0.05%p 인하)</li> <li>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(학기당 100만원→150만원)</li> <li>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(연 1,856만원→ 연 2,013만원)</li> <li>■ 학자금대출 통지 정책 개선(대출 단계별 통지 자동화 및 통지 방식 다양화)</li> <li>■ 학자금 대출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개선(정규학기 초과자에 대한 심사를 재단의 자동 심사로 일원화 등)</li> <li>■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(C학점 이상 → 폐지)</li> <li>■ 초과학기자 지원 기준 완화(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 학자금대출 허용)</li> <li>■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(소득 3구간 이하 → 소득 4구간 이하)</li> </ul>
'19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(연 2,013만원→ 연 2,080만원)</li> <li>■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(ICL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(퇴직), 폐업, 육아휴직으로 국제청으로부터 의무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신청 가능)</li> <li>■ 대출조건(대출기간, 상환방법) 변경 횟수 확대(대출 계좌별 1회 → 2회)</li> <li>■ 사전채무조정제도(프리워크아웃) 신청 대상 확대('만기경과 채권 보유자'도 신청 가능)</li> <li>■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(학기당 150만원 → 학기당 50만원)</li> <li>■ 특별추천제도 개선(성적·이수학점 미달자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고 재단이 심사 후 대출 승인(특별승인제도))</li> <li>■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대출 허용(특별추천을 통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허용 → 성적·이수학점과 관계없이 학자금대출 허용)</li> <li>■ 특별승인 성적기준 완화(성적·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시 최소 성적기준(60점) 적용 → 직전학기에 사고·질병으로 4주(주말·공휴일 포함 28일)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승인 성적기준(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 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) 적용 제외)</li> <li>■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(기존 기본형(필수, 3개 과정)·심화형(선택, 1개 과정) 온라인 금융교육 → 8개 신규 교육과정(각 10분)으로 개편하고, 학생에게 교육과정 선택권 제공)</li> <li>■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(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→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)</li> <li>■ 지연배상금을 인하·부과체계 개편(3개월 이하 7%, 3개월 초과 9% → 6%로 완화)</li> </ul>

구 분	주요 제도 개선 사항
'20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출금리 인하('19. 2학기 2.2% → '20. 1학기 2.0%로 0.2%p 인하)</li> <li>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(연 2,080만원→ 연 2,174만원)</li> <li>■ 지연배상금을 부과체계 개편(단일금리 방식 → 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(2.5%) 방식)</li> <li>■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('19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인 성년자의 부모에게 대출정보 안내 → '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)</li> <li>■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(4회 → 폐지)</li> <li>■ 대출금리 인하('20. 1학기 2.0% → '20. 2학기 1.85%로 0.15%p 인하)</li> <li>■ 코로나19 실직·폐업자 특별상환 유예대출 '20년말까지 한시 지원(상환유예기간 최대1년, 학부졸업여부와 나이(만35세 이하)와 관계없이 지원)</li> <li>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가산금리 인하(2.5% → 2.0%, '20-2학기)</li> <li>■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금융교육 동영상 제공(진단평가 형식의 금융교육 진행 →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모바일 앱으로 총 8개의 금융교육 동영상 콘텐츠 제공)</li> <li>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기간 확대(사전승인 기준일: 등록 마감일 포함 5일(공휴일 제외) 전 → 학기 개시월(3월, 9월) 10일(공휴일 제외) 전까지 확대)</li> <li>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('상환이행 약정서' 징구)</li> <li>■ 통합6년제(의대 등)의 본과 진학 학생은 학칙에 따른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경우,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라도 대출 가능</li> </ul>
'2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출금리 인하('20. 2학기 1.85% → '21. 1학기 1.70%로 0.15%p 인하)</li> <li>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(연급여 기준 2,174만원→ 2,280만원)</li> <li>■ 코로나19 실직·폐업자 특별상환 유예대출 유예기간 연장('23. 2. 28.까지 유예기간 연장)</li> <li>■ 특별상환 유예대출 유형 신설(유형13: 실직·폐업자 지원, '21. 12. 31.까지 신청)</li> </ul>

참고 4

대출채권 관리 업무 흐름도

※ 대출채권 관리 업무흐름도



**참고 5**

**「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」 신·구대비표**

구 분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전)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II. 202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및 주요 개선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개선사항 ○ (생 략)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개선사항 ○ <u>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</u> ○ <u>4구간 이하 ICL 일원화</u> ○ <u>상환기준소득 인상</u> ○ <u>실직·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추가 지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V. 2020학년도 2학기 대출 일정	<input type="checkbox"/> '20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(안)	<input type="checkbox"/> '21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7월</th> <th>8월</th> <th>9월</th> <th>10월</th> <th>11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등록금 대출</td> <td colspan="5">신청: 7.9.(목)~10.15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9.~11.12.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실행: 7.9.(목)~10.15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9.~11.13.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생활비 대출</td> <td colspan="5">신청: 7.9.(목)~11.12.(목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실행: 7.9.(목)~11.13.(금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</td> <td colspan="5">신청: 7.9.(목)~11.12.(목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실행: 7.9.(목)~11.13.(금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7월	8월	9월	10월	11월	등록금 대출	신청: 7.9.(목)~10.15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9.~11.12.)					실행: 7.9.(목)~10.15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9.~11.13.)					생활비 대출	신청: 7.9.(목)~11.12.(목)					실행: 7.9.(목)~11.13.(금)					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	신청: 7.9.(목)~11.12.(목)					실행: 7.9.(목)~11.13.(금)		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1월</th> <th>2월</th> <th>3월</th> <th>4월</th> <th>5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등록금 대출</td> <td colspan="5">신청: 1.6.(수)~4.14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6.~5.6.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실행: 1.6.(수)~4.14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6.~5.7.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생활비 대출</td> <td colspan="5">신청: 1.6.(수)~5.6.(목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실행: 1.6.(수)~5.7.(금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</td> <td colspan="5">신청: 1.6.(수)~5.24.(월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실행: 1.6.(수)~5.25.(화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1월	2월	3월	4월	5월	등록금 대출	신청: 1.6.(수)~4.14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6.~5.6.)					실행: 1.6.(수)~4.14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6.~5.7.)					생활비 대출	신청: 1.6.(수)~5.6.(목)					실행: 1.6.(수)~5.7.(금)					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	신청: 1.6.(수)~5.24.(월)					실행: 1.6.(수)~5.25.(화)				
	구 분	7월	8월	9월	10월	11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등록금 대출	신청: 7.9.(목)~10.15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9.~11.12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실행: 7.9.(목)~10.15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9.~11.13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활비 대출	신청: 7.9.(목)~11.12.(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실행: 7.9.(목)~11.13.(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	신청: 7.9.(목)~11.12.(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실행: 7.9.(목)~11.13.(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1월	2월	3월	4월	5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록금 대출	신청: 1.6.(수)~4.14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6.~5.6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실행: 1.6.(수)~4.14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6.~5.7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활비 대출	신청: 1.6.(수)~5.6.(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실행: 1.6.(수)~5.7.(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	신청: 1.6.(수)~5.24.(월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실행: 1.6.(수)~5.25.(화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※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,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(예: 8월말 등록마감 → 7월초 이내 신청) ※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	※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,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(예: 2월말 등록마감 → 1월초 이내 신청) ※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한국장학재단 <u>홈페이지</u> 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	○ 한국장학재단 <u>누리집</u> 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전)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후)
<p>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</p> <p>I. 학자금 대출 지원</p> <p>1. 대출제도 개요</p>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대출자격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성적기준)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,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* 이상</li> <li>*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</li> <li>※ 통합6년제(의대 등)의 본과 진학 학생은 학칙에 따라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,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라도 대출 가능</li> </ul>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대출자격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공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성적기준)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,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* 이상</li> <li>*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</li> <li>※ 통합6년제(의대 등)의 본과 진학 학생은 학칙에 따라 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,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라도 대출 가능</li> <li>* <u>대학의 학칙 등에서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(이수학점, 백분위)으로 반영</u></li> </ul>
<p>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</p> <p>I. 학자금 대출 지원</p> <p>1. 대출제도 개요</p>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대출자격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소득기준)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학부생</li> <li>※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신용요건)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*을 충족하며, 대출 제한</li> </ul>	<p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대출자격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소득기준)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학부생</li> <li>※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</li> <li>※ <u>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</u>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신용요건)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*을 충족하며, 대출 제한</li> </ul>

구 분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전)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후)
	<p>대상자가 아닐 것</p> <p>- 단, <u>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</u></p>	<p>대상자가 아닐 것</p> <p>- 단, <u>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하며, 그 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</u></p>
<p>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</p> <p>1. 학자금 대출 지원</p> <p>1. 대출제도 개요</p>	<p>② <b>대출금리</b></p> <p>○ (대출금리) 연 1.85% (‘20.7.9.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)</p>	<p>② <b>대출금리</b></p> <p>○ (대출금리) 연 1.70% (‘21.1.6.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)</p>
<p>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</p> <p>1. 학자금 대출 지원</p> <p>1. 대출제도 개요</p>	<p>⑤ <b>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</b></p> <p>○ ‘20학년도 2학기 「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」에 따름</p>	<p>⑤ <b>가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</b></p> <p>○ ‘21학년도 1학기 「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」에 따름</p>
<p>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</p> <p>1. 학자금 대출 지원</p> <p>1. 대출제도 개요</p>	<p>⑦ <b>기타사항</b></p> <p>○ <u>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계속 지원</u></p> <p>- (유형12: 코로나19 실직·폐업자 지원) ‘20. 12. 31. 까지 지원</p> <p>※ 단, <u>학부졸업 및 나이(만35세 이하)와 관계없이 지원하며, 2020. 5. 4. ~ 2020. 12. 31.까지 신청기간 내 목표인원 달성 또는 예산소진이 예상될 경우</u></p>	<p>⑦ <b>기타사항</b></p> <p>○ <u>실직·폐업자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계속 지원</u></p> <p>- (유형12: 코로나19 실직·폐업자 지원) ‘23. 2. 28.까지 유예기간 연장 신청</p> <p>※ ‘20년 실직·폐업으로 1년간 상환이 유예된 자가 유예기간 종료되는 시점에 도 실직·폐업 상태인 경우 유예기간을 1년씩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</p>

구 분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전)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후)											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조기 종료가능</u> ※ (신 설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(유형13: 실직·폐업자 지원) '21. 12. 31.까지 신청 ※ '21.1.1. 이후 실직·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에게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부여(단, 만 35세 이하 학부 졸업생 등 기본요건 충족 필요)</p>															
<p>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1. 학자금 대출 지원 2.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</p>	<p>□ '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</p> <p>○ '18년 및 '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'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에 따라 '20학년도 신입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</p>	<p>□ '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</p> <p>○ '18년~'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'21학년도 신입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</p>											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《 '2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》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(제한 범위)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학 교 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4 년 제 (11 교)</td> <td>일반 상환 50% 제한 (4교) 가야대학교, 금강대학교, 김천대학교, 예원예술대학교</td> </tr> <tr> <td>일반 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7교) 경주대학교, 부산장신대학교, 신영대학교, 제주국제대학교, 창신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전 문 대 (10 교)</td> <td>일반 상환 50% 제한 (5교) 고구려대학교, 두원공과대학교, 서라벌대학교, 서울예술대학교, 세경대학교</td> </tr> <tr> <td>일반 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5교) 광양보건대학교, 동부산대학교, 서해대학, 영남외국어대학교, 응지세무대학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대학명은 가나다순임</p>	구분(제한 범위)	학 교 명	4 년 제 (11 교)	일반 상환 50% 제한 (4교) 가야대학교, 금강대학교, 김천대학교, 예원예술대학교	일반 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7교) 경주대학교, 부산장신대학교, 신영대학교, 제주국제대학교, 창신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	전 문 대 (10 교)	일반 상환 50% 제한 (5교) 고구려대학교, 두원공과대학교, 서라벌대학교, 서울예술대학교, 세경대학교	일반 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5교) 광양보건대학교, 동부산대학교, 서해대학, 영남외국어대학교, 응지세무대학교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《 '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》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(제한 범위)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학 교 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4 년 제 (7 개 교)</td> <td>일반 상환 50% 제한 (2개교) 금강대학교, 예원예술대학교</td> </tr> <tr> <td>일반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5개교) 경주대학교, 신영대학교, 제주국제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전 문 대 (6 개 교)</td> <td>일반상환 50% 제한 (2개교) 고구려대학교, 서라벌대학교</td> </tr> <tr> <td>일반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4개교) 광양보건대학교, 서해대학, 영남외국어대학교, 응지세무대학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대학명은 가나다순임</p>	구분(제한 범위)	학 교 명	4 년 제 (7 개 교)	일반 상환 50% 제한 (2개교) 금강대학교, 예원예술대학교	일반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5개교) 경주대학교, 신영대학교, 제주국제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	전 문 대 (6 개 교)	일반상환 50% 제한 (2개교) 고구려대학교, 서라벌대학교
구분(제한 범위)	학 교 명																
4 년 제 (11 교)	일반 상환 50% 제한 (4교) 가야대학교, 금강대학교, 김천대학교, 예원예술대학교																
	일반 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7교) 경주대학교, 부산장신대학교, 신영대학교, 제주국제대학교, 창신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																
전 문 대 (10 교)	일반 상환 50% 제한 (5교) 고구려대학교, 두원공과대학교, 서라벌대학교, 서울예술대학교, 세경대학교																
	일반 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5교) 광양보건대학교, 동부산대학교, 서해대학, 영남외국어대학교, 응지세무대학교																
구분(제한 범위)	학 교 명																
4 년 제 (7 개 교)	일반 상환 50% 제한 (2개교) 금강대학교, 예원예술대학교																
	일반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5개교) 경주대학교, 신영대학교, 제주국제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																
전 문 대 (6 개 교)	일반상환 50% 제한 (2개교) 고구려대학교, 서라벌대학교																
	일반상환·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4개교) 광양보건대학교, 서해대학, 영남외국어대학교, 응지세무대학교																

구 분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전)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후)								
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II.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2.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	<input type="checkbox"/>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 원 리금의 계산  <input type="checkbox"/> (상환기준소득) '20년 귀 속 총급여 기준 2,174만원 (공제 후 1,323만원)	<input type="checkbox"/>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 원 리금의 계산  <input type="checkbox"/> (상환기준소득) '21년 귀 속 총급여 기준 2,280만원 (공제 후 1,413만원)								
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II.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3.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- (해외유학생 파악) ① 채 무자 신고 : 재단이 파악 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 하는 경우, ② <u>채무자의 미신고 : 법무부로부터 출 입국 정보 수신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- (해외유학생 파악) ① 채 무자 신고 : 재단이 파악 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 고하는 경우(채무자가 재 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), ② 채무자의 미신 고 : 법무부로부터 출입 국 정보 수신  <u>※ ②번의 경우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 에게 신고제도를 안내하 여 유학신고를 독려</u>								
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(참고 1)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	<p><b>[표] 소득 기준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4 1417 906 1697"> <thead> <tr> <th>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</th> <th>일반 상환 학자금대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자금 지원 8구 간 이내</li> <li>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자금 지원구 간 제한 없음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자금 지원 8구 간 이내</li> <li>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자금 지원구 간 제한 없음</li> </ul>	<p><b>[표] 소득 기준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40 1417 1412 1995"> <thead> <tr> <th>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</th> <th>일반 상환 학자금대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</li> <li>※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 출만 이용 가능</li> <li>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부생: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</li> <li>※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 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 반상환 학자금대 출 가능</li> <li>• 대학원생: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</li> <li>※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 출만 이용 가능</li> <li>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부생: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</li> <li>※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 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 반상환 학자금대 출 가능</li> <li>• 대학원생: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자금 지원 8구 간 이내</li> <li>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자금 지원구 간 제한 없음</li> </ul>									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</li> <li>※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 출만 이용 가능</li> <li>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학부생: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</li> <li>※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 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 반상환 학자금대 출 가능</li> <li>• 대학원생: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</li> </ul>									

구 분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전)	2020학년도 2학기(변경 후)
<p>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</p> <p>(참고 1)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</p>	<p>[표] 대출 금리(취업 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변동금리(연 1.85%)</li> </ul> <p>[표] 대출 금리(일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정금리(연 1.85%)</li> </ul> <p>[표] 대출기간(취업 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'20년 기준 연소득 2,174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</li> </ul>	<p>[표] 대출 금리(취업 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변동금리(연 1.70%)</li> </ul> <p>[표] 대출 금리(일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정금리(연 1.70%)</li> </ul> <p>[표] 대출기간(취\취업 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'21년 기준 연소득 2,280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</li> </ul>
<p>(붙임)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</p> <p>(참고 2) 대출 업무 절차</p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background-color: #e0ffe0;"> <p><b>대출준비</b>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left: 10px;"> <p>(학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인인증서 발급</li> <li>-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</li> </ul> <p>(가구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인인증서 발급</li> <li>- 가구원 동의</li> </ul> </div> <p>※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,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(예: 8월 말 등록마감 → 7월초 이내 신청)</p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background-color: #e0ffe0;"> <p><b>대출준비</b>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left: 10px;"> <p>(학생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인증서 발급</li> <li>-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</li> </ul> <p>(가구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인증서 발급</li> <li>-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</li> </ul> </div> <p>※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,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(예: 2월 말 등록마감 → 1월초 이내 신청)</p>